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이수정 김경옥
경기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 즉 성범죄 재범율 위험군 선별과 치료대안 등에 관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노력하였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및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를 논할 때, 성범죄에 관한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실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성범죄의 재범율 조차 잘못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재범예측력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외국의 성범죄 위험군에 대한 선별절차 조차 잘 알지 못한 채,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처분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집행하기 시작했거나 추가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따라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선별절차 및 처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위험평가도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수용 대신 집행되는 처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아가 치료적 처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처우방안의 집행절차 및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주요어 : 성범죄자 등록제도, 치료적 사범, 성범죄 재범율

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즉, 모르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아동에 대한 성적 추행 및 강간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성범죄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에 따라서 일생에 한 번 발생하고 재발하지 않는 우발적인 성범죄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특정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근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성범죄자들의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의 도입 이전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 예컨대 성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재고,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결정할 선별의 기준 및 각 수준 별 위험성에 근거한 단계적 정책 적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성범죄자들은 일반 폭력범죄자들과는 다른

이수정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재직중이고, 김경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음.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특성을 보이는 범죄자 집단이며,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은 나름대로 고유하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단지 구금이나 감시 등의 방안으로는 자연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며, 위험 요인을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시행되어야만 재범의 예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율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행하게 되는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들

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들이 이에 포함되는지를 외국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외국의 형사정책 방안과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방안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형사정책적 대안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성범죄자 재범율 분석

성범죄 발생 현황

성범죄자의 재범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미국의 성범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율이 외국에 비하여 어떤 수준인가를 살

표 1. 한국의 강력범죄발생 현황(연도별)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계	294,569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2,369	497,066
살 인	784 (0.27%)	963 (0.29%)	976 (0.25%)	941 (0.18%)	1,051 (0.20%)	957 (0.20%)	998 (0.20%)
강 도	4,420 (1.50%)	5,516 (1.67%)	4,972 (1.30%)	5,461 (1.05%)	5,692 (1.07%)	5,906 (1.25%)	7,292 (1.47%)
강 간	5,627 (1.91%)	5,978 (1.81%)	6,359 (1.66%)	6,855 (1.32%)	6,751 (1.27%)	6,119 (1.30%)	6,531 (1.31%)
폭 력	200,675 (68.12%)	226,409 (68.55%)	282,274 (73.51%)	333,630 (64.06%)	338,045 (63.51%)	283,930 (60.11%)	294,893 (59.33%)

주: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단위: 명(체포된 사람 수)
자료: 경찰청(2004), 경찰백서.

표 2.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현황(연도별); 보고된 범죄 건 수

구 분	'97 발생건수	'98 발생건수	'99 발생건수	'00 발생건수	'01 발생건수	'02 발생건수	'03 발생건수	'03년 체포인원수
계	1,636,096	1,533,887	1,426,044	1,425,486	1,439,480	1,423,677	1,381,259	597,026
살 인	18,208 1.11%	16,974 1.11%	15,522 1.09%	15,586 1.09%	16,037 1.11%	16,229 1.14%	16,503 1.19%	13,190 2.21%
강 간	96,153 5.88%	93,144 6.07%	89,411 6.27%	90,178 6.33%	90,863 6.31%	95,235 6.69%	93,433 6.76%	26,350 4.41%
강 도	498,534 30.47%	447,186 29.15%	409,371 28.71%	408,016 28.62%	423,557 29.42%	420,806 29.56%	413,402 29.93%	107,553 (18.01%)
폭 행	1,023,201 62.54%	976,583 63.67%	911,740 63.93%	911,706 63.96%	909,023 63.16%	891,407 62.61%	857,921 62.12%	449,933 75.37%

주: 폭력범죄에는 살인, 강간, 강도 및 폭행이 포함됨
단위: 보고된 범죄 건수.
자료: FBI(2003), Uniform Crime Report.

펴보았다. 표 1은 경찰백서(2004)에서 집계된 공식통계로서, 체포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발생현황을 조사한 것이며, 표 2에는 미국의 FBI에서 공식 집계되는 UCR (Uniform Crime Report)에서 조사된 폭력범죄의 발생 현황을 체포된 범죄자 수로서 살펴본 것이다. 표 2의 끝에 제시된 2003년도 통계치를 보면 보고된 범죄 건수 중에서 모든 범죄자가 다 체포된 것이 아니므로, 체포된 범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의 유형이 다소 상이하여 통계 결과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비교해본다고 할 때 강간범죄 발생율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범을 측정의 기준

재범율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재범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재범율의 측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재범의 정의는 범죄자의 행위의 측면과 측정 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재범(recidivism)의 의미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한다”라는 것이다. 즉, 과거에 저지른 범죄 행동을 다시 저지른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과거에 행한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행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과거에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강간 범죄를 행하여 이로 인해 다시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를 재범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정확하게 동일한 유형의 범죄는 아니지만, 동일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죄를 다시 행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로서, 과거에 근친상간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강간으로 유죄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과거에 행한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주의 범죄를 행하여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로서, 과거에는 성범죄를 행했지만, 재범으로는 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이다. 넷째, 위의 모든 유형과 동일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는 경우로서 암수범죄(暗數犯罪)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Furby, Weinrott & Lyn Blackshaw, 1989). 일반적으로 공식통계로 재범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치의 재범율을 측정하

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통계에 의한 재범율의 측정은 동일한 범주에 대한 재범 여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세 번째 관점과 같이 동일하지 않은 다른 범주의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도 재범 수치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서는 동종 범죄의 재범율을 고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관찰에 근거한 성범죄의 재범을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의 재범의 정의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며, 암수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범율을 평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동안의 시간 동안 재범을 측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범율 역시 증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역시 성립한다. Prentky, Lee, Knight와 Cerce (1997)는 25년을 관찰하게 되면 일반 강간범의 약 반수인 52% 정도까지 다시 재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그림 1). 짧게는 출소 후 2-3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재범 연구에 따라 장기 종단적 관찰을 시행하는 시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최소한 5년 정도의 관찰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다음으로 재범율의 측정 기준의 문제이다. 재범율의 측정 기준은 재범의 발생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검거시점을 재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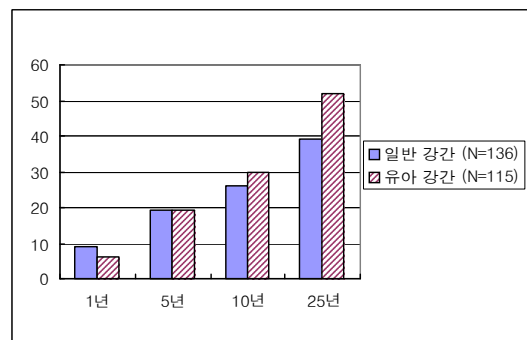


그림 1. 유형별 성범죄자들의 재범발생 실태

주: 세로축의 단위 %

표 3. 외국의 성범죄자 재범률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추적기간	성범죄의 재범률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 Rehabilitative Service(1984)	1980에서 1983년 사이에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출감한 182명의 성범죄자 - 59명; 수감 중에 HRS 로부터의 치료프로그램을 완료한 성범죄자 - 31명; 수감 중에 HRS로부터의 치료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성범죄자 - 92명; 수감 중에 HRS 로부터의 치료프로그램을 거부한 성범죄자	2개월-7년(84개월) 평균 30개월	- 13.6% 6.5% 10.9%
Nagayama Hall & Proctor(1986)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Western State Hospital에 정신감정을 위하여 위탁된 342명의 성범죄자(비정신병자로 판명됨)	지역사회로 돌아간 후 5년	27.5%
J.J. Peters Institute(1980)	231 명의 필라델피아 보호관찰 대상자 147명; 보호관찰+집단치료 모두 할당받은 범죄자 84명; 보호관찰만 할당받은 범죄자	10년	11.3% 13.6% 7.2%
Quinsey, Chaplin & Carrigan(1980)	30명의 바이오피드백, 고전적 조건기법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동성애적 소아기호 증 성범죄자(캐나다)	치료 후 평균 28개월	20%
Gibbens, Soothill & Way(1980)	1951년 영국에서 13 세 이하의 소녀에 대한 불법적 성행위(sexual intercourse)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48 명의 남성 1961년 영국에서 13 세 이하의 소녀에 대한 불법적 성행위(sexual intercourse)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62명의 남성	유죄선고 후 24년 유죄선고 후 15년	29% 10%

자료: Furby, Weinrott & Blackshaw, 1989에서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로 재구성.

주: HRS- Department of Health & Rehabilitative Service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유죄 확정 후 구금이 되는 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이다. 이들 중 만일 첫 번째 방안을 재범 규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재범율은 아마도 가장 높아질 것이며, 두 번째 방안을 택하게 되면 기소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즉 plea bargain¹⁾ 등이 개입되어 재범율이 비교적 낮게 잡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흔히 재범율이 가장 낮게 책정될 듯하지만 선도조건부 가석방 시 규율 위반으로 재수감되는 사례들까지를 포함되어 이 역시 꼭 순수 재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이수정, 2004).

성범죄 재범률 분석

미국에서의 성범죄 재범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의 재범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24,000명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61개의 재범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단지 13.4%만이 석방된 지 3-4년 이내에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 Bussiere, 1998). 성범죄자들 중 약 12% 정도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아동 성추행범은 10%, 강간범들은 22% 정도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에 대한 재범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면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율은 암수범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보다 과소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약 20년간의 추적조사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30-40%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nson, Steffy & Gauthier, 1993; Prentky, Lee, Knight & Cercer, 1997). 그러나 암수율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들의 전반적인 재범율은 평균적으로 비성범죄자들의 재범율보다는 높지 않았다(Beck & Shipley, 1989).

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은 들쭉날쭉하다. 이런 불일치하는 결과가 야기된 데에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1) 검찰이 사건 관련자 및 피의자와 협상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범죄의 유형이나 성범죄자가 어떤 위험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율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Gibbens, Soothill과 Way (1978)는 근친상간의 재범율은 약 4% 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Hanson & Bussiere(1998)은 전체 성범죄의 재범율은 약 13%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림 1을 보면, 성범죄에 포함되는 강간과 아동치한의 재범율을 보면, 추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 성추행범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 성추행범의 경우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들보다 높은 재범 위험 요인인 일탈적 성적 기호나 아동을 피해자로 선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에서는 미국에서 행해진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연구 대상, 추적기간에 따라서 재범 결과가 상이하게 측정되었지만, 기타 범죄를 제외하고 성범죄만으로 재범율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이 29%로서 약 3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추적 기간이 길수록 재범율 또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재범율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내의 성

표 4. 한국의 중요 범죄의 재범 현황(2003년)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12,212	1,085	6,970	5,425	1,417	61,651	435,664
재범자	337,540	764	4,873	3,664	1,048	32,980	294,211
비율(%)	69.9	70.4	69.9	67.5	74.0	53.5	67.5

주: 재범자는 동종 및 이종 범죄 재범을 합한 수치임. 해당 범죄의 재범율을 발제한 도표로서 전체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명

자료: 경찰청 (2004), 경찰백서.

범죄자 재범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사에 따라서 통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일반적인 성범죄자 재범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경찰백서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의 재범율은 약 67.5%이며(표 4),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상공개 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83.4%에 이르고 보고된 바 있다(여의도연구소, 2005).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가 성범죄의 재범율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표 5. 1996-2000년 가석방자 재입소율 현황

죄 명	구 분	가석방인원 (%)	재입소자 (%)	동일죄명 재입소자 (%)	다른죄명 재입소자 (%)
전 체		26,874(100%)	2,108(7.8)	917(3.4)	1,191(4.4)
절도 등		3,123(11.6)	744(23.8)	426(13.6)	318(10.2)
폭행·상해 등		3,496(13.0)	369(10.6)	168(4.8)	201(5.7)
강간 등		2,490(9.3)	181(7.3)	74(3.0)	107(4.3)
교통사고특례법 등		4,638(17.3)	200(4.3)	81(1.7)	119(2.6)
방 화		151(0.6)	10(6.6)	1(0.7)	9(6.0)
문서 등 위조범		306(1.1)	22(7.2)	8(2.6)	14(4.6)
살 인		1,688(6.3)	26(1.5)	4(0.2)	22(1.3)
강도 등		2,802(10.4)	198(7.1)	77(2.7)	121(4.3)
사기 등		3,450(12.8)	149(4.3)	48(1.4)	101(2.9)
횡령·배임		528(2.0)	20(3.8)	2(0.4)	18(3.4)
군무이탈		731(2.7)	4(0.5)	3(0.4)	1(0.1)
간 통		423(1.6)	4(0.9)	0(0.0)	4(0.9)
기 타		3,048(11.3)	181(5.9)	25(0.8)	156(5.1)

주: 절도 등(절도, 주거침입, 장물), 폭행·상해 등(상해, 상해치사상, 폭행, 폭행치사상, 폭력행위 등), 강간 등(강제추행·동치사상, 강간·동치사상), 교통사고특례법 등(교통사고특례법, 도교범, 도주차량), 강도 등(강도·동치사상, 강도강간·동치사상), 사기 등(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해당 범죄의 재범율을 발제한 도표로서 전체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법무부 교정국 제3차 가석방자 재입소율 조사자료.

가에 대해서는 공식통계의 경우 이미 검거된 범죄자들의 과거 검거되었던 전력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재범을 조사인 법무부에서 실시한 제3차 가석방자 재입소를 조사자료에 의하면 성범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재범율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이 아니며, 절도 및 폭력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표 5).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4와 표 5를 비교하여 볼 때 주의할 점은 표 5의 강간과 표 5의 강간 등은 동종의 유목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의 위험성

성범죄의 재범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사해주는 바는 전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성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 가정되었다. 이런 상습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 중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및 가학적이거나 성적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군이 해당된다. 기존의 성범죄 재범 연구들(Hanson & Thornton, 1999)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과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범죄자들의 비 성적(性的)인 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비 성범죄자들의 재범 예측 요인과 동일하다. 두 집단 모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이전의 범죄경력, 청소년 비행, 반사회적 성격, 연령, 인종 및 약물남용이었다(Hanson & Bussiere, 1998).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의 재범 예측인자들은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유형별 재범예측 비교연구 결과 표 6에는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다.

표 6. 성범죄 재범의 예측인자

위험 요소	r	n(k)
성적 일탈		
아동에 대한 PPG 성적 흥미	.32	4,853(7)
일탈적 성적 선호	.22	570(5)
이전의 성범죄 경력	.19	11,294(29)
일부 낮은 피해자	.15	465(4)
자연령에서의 시작	.12	919(4)
무관계 피해자	.11	6,889(21)
소년 피해자	.11	10,294(19)
다양한 성범죄 경력	.10	6,011(5)
범죄 경력/생활양식		
반사회적 성격	.14	811(6)
이전 범죄	.13	8,683(20)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령	.13	6,969(21)
미혼	.11	2,850(8)
치료 전력		
치료 중도탈락	.17	806(6)

주: r은 Hanson & Bussiere(1998)에서 산출된 평균 상관계수이며, k는 연구의 수 그리고 n은 전체 사례수이다. PPG는 penile plethysmography를 의미한다.
 자료: Hanson, 1997; Winick & La Fond, 2003.

표 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탈적인 성적 선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낮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우, 소년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우 등이 높은 재범예측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Quinsey(1986)의 아동성추행범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해주는 3개의 주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의 성범죄, 남성 피해자의 선택, 그리고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선택이 그것이다. Frisbie & Dondis(1965)는 1,035명의 이성애자, 428명의 동성애자, 그리고 49명의 양성애자인 아동성추행범들에 대한 추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위의 3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재범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병질자(sociopath)로 진단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더욱 일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해내었다. Rice, Harris & Quinsey(1990)는 54명의 강간범죄자 집단에 대한 성

범죄 및 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적 기간은 46개월이었다. 재범의 예측인자에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폭력범죄 재범과 관련된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포함되었는데, 정신병질, 과거의 범죄경력, 연령, 결혼여부 등이 포함되었고, 성범죄의 예측인자로는 특히 과거의 범죄경력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3%가 폭력범죄로 재범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28%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으로는 이전의 폭력범죄 전과, 성범죄 전과, 음경(陰莖)추정법에 의해 측정된 일탈적 성적 기호가 포함되었다.

Hanson & Bussiere(1998)는 성범죄의 재범 예측인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들은 87개의 연구를 발견하였고, 1989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었다. 사례 수는 평균적으로 198명이었으며, 4년 정도의 추적조사를 수행한 연구들이었다. 총 28,972명의 성범죄자들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해주는 주요 요인에는 일탈적인 성적 기호와 과거의 범죄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음경(陰莖)추정법에 의해 측정된 일탈적인 성적 기호였다.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이전의 성범죄 경력과 성범죄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 주요 예측인자는 연령과 미혼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폭력범죄를 예측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덜 중요하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예측 요인에는 남성 피해자의 선택과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의 범죄 경력을 재범 위험성 판단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에 있어서 범죄 경력은 두 번째 수준 정도의 예측력을 보이며, 범죄 경력 외에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 요인은 더욱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세부정보 공개를 위한 대상자 선별 기준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

금만을 통한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재범의 위험 요소를 갖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의 경우 별도의 형사정책적 방안이 적용될 필요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발생했던 일련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로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왔다.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정책을 논함에 앞서서 강조하여야 할 것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되도록 마련되기 보다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서부터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정책의 부과 및 위험성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시스템에서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기적 치료 프로그램의 부과에 이르기까지 각 주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시사점을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에 비추어 논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시스템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성범죄자의 등록이나 차별적 치료프로그램의 부과라는 형사정책적 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들이 발생한 이후에 성범죄에 대한 등록시스템 및 화학적 치료프로그램 부과를 명문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Earl Shriner는 출소 후 2년이 지난 때에 7세 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소년의 성기를 절단한 후 사망하도록 방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워싱턴에서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서 1990년 The Community Protection Act(지역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The Community Protection Act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등록 및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폭력 흉악범에 대해서는 형이 만기된 이후에도 석방시키지 않고 별도의 치료프로그램을 부과하는 Sexually Violent Predator(SVP) Law(성폭력 흉악범 재

범방지법)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워싱턴 주 뿐만이 아니라 뉴저지 주에서는 성범죄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Jesse Timmendequas가 7세 소녀인 Megan Kanka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뉴저지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석방된 후에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들이 뉴저지 주로 이사할 경우에는 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연방법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주에 대하여 성범죄자들의 등록법(registration law)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에서 등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몇몇 주에서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mandatory chemical castration law)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성범죄자들 중 가석방 대상자들이나 감형에 의한 석방자들에 대하여 성충동을 감소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이 만기될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Winick & La Fond, 2003).

The Community Protection Act는 웨터링법(Wetterling Act), 메간법(Megan's Law), 라이크너법(Pam Lychner Act)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웨터링법은 1994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이콥 웨터링 아동범죄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이다. 이 법은 주 정부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효과적인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웨터링 법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는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 범죄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법집행 기관에 현재의 주소를 10년 동안 제공해야 한다. 성폭력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은 최고 위험군으로 주정부에 보다 광범위한 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웨터링 법에서는 성폭력흉악법(SVP)을 평가해내는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주정부는 적절한 등록명부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정부는 대부분의 범죄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도로 그리고 성폭력 흉악범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혹은 매90일 마다 주소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주정부는 등록명부 정보를 유지해야 하고, 법집행기관에 이를 배포해야 한다. 넷째, 주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공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메간법은 1996년에 입법된 법으로, 웨터링 법의 지역 사회 통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원래의 웨터링 법은 주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정보의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메간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등록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구는 흔히 '강제적 지역사회 통지(mandatory community notification)' 제도라고 불린다. 메간법의 준수 기간은 웨터링 법과 같으며, 전체 웨터링 법의 일부분을 수정한 개정법이다.

라이크너법은 1996년 10월에 제정된 팜 라이크너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 법(Pam Lychner Sex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 of 1996)이다. 라이크너법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주 및 지역단위의 정부에 대한 수많은 의무를 부여하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방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FBI에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소재와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FBI가 최소한도의 충분한 성범죄자 등록 프로그램이 없는 주에 대한 성범죄자의 등록을 직접 관장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라이크너법의 입법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등록정보의 확보를 요건으로 하는 웨터링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웨터링 법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주정부에 10년간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라이크너 법에서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종신토록 등록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성폭력 흉악범과 중범죄자, 상습범이 포함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한국의 신상공개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신상공개를 시행하는 근거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대상 범죄의 확산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성인의 경우에,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 방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게시판에 6월간 게재 및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며,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이 공개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는 이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나, 본 논문의 취지에 적합한 몇 가지 논의점을 지적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의 기간과 방식에 있어서의 획일적인 신상공개의 적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제도는 성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받게 되는 피해가 성범죄자 자신의 인권 침해의 정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훨씬 초과할 정도의 높은 수준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선별 기준은 합리적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신상공개의 대상자 선별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주요 기준은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동기, 수단, 결과, 죄질 등 10점으로 대상자의 위험성, 과거의 범죄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본 범죄의 내용만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와는 다른 재범 위험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 제도 이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감소하였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시각에서는 오히려 신상공개로 인하여 청소년 성매수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수요 욕구가 더욱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 성매수 방식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인다는 것도 부정적 측면 중 한 가지이다. 이것은 청소년성범죄의 피해자로 간주되었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청소년 성범죄의 여러 양상들에 대해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의 내용

미국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법을 보면, 성범죄자의 분류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적 방식과 특정 기관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강제적 방식(compulsory approach)은 법으로 정한 아동 상대 내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를 등록 및 통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 범죄자의 재범위험과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2001년 현재 미국의 19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한편,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나머지의 주들이 취하고 있는 임의적 방식은 등록 및 분류-통지의 결정에 관한 재량의 정도를 다양화하는 시행방식이다. 임의적 방식에 의하여 성범죄자들을 위험성 및 상습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보공개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이다. 특히 성폭력 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 상습적 성범죄자 등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정보공개 및 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제정된 Sexually Violent Predator(SVP) Law(성폭력 흉악범 재범방지법)의 목적은 (1) 성범죄자들 중 소수집단에 대한 제한적 해결방안의 제시 (2) 기존의 정기형 선고 시스템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권한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의 제시이다. SVP Law는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로 2002년에는 16개 주에서 추가로 제정하였다(Winick & La Fond, 2003).

워싱턴 주에서는 SVP로 확인된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의 치료 위탁을 명한다. 각 주에서는 성폭력 흉악범에 해당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워싱턴 법에서 다음과 같이 성폭력 흉악범을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 흉악범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고소되었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정신이상이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의 유형은 강제적 강간, 법에 위반되는 강간, 성적인 동기를 갖는 기타 행동 및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외설스러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흉악범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첫째, 형이 만기될 예정에 있는 유죄가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 둘째,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형이 만기될 예정인 소년사범, 셋째, 재판받을 능력이 없거나 심신 상실 등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자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신건강 시설에서 성폭력 흉악범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Massachusetts의 경우 교정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워싱턴 주의 경우 별도의 행정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모든 치료는 자발적인 지원자에게 제공되며, 워싱턴의 경우 SVP로 청원서가 제출된 수형자 중 2/3만이 동의하고 있다(Winick & La Fond, 2003).

성폭력 흉악범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에서는 연령, 범죄유형, 정

신장애 진단 및 정신상태, 결정 기준, 책임 기관, 결정을 위한 배심재판 여부 및 구금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연령은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16개 중 1/3 정도가 청소년 성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들에서는 18세 이상의 청소년 혹은 성인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범죄 유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주들은 한 건의 범죄(single offense)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주들이 정신이상 혹은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정신 상태라는 증거를 요구하며, 가장 일반적인 결정 기준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likely to engage)’이 있는 경우이며, ‘재범의 의지가 있는 경우(will engage)’ 혹은 ‘재범을 저지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substantially probable that the person will engage)’이다.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은 정해진 형기를 복역하고 난 후에 사회의 보호차원에서 다시 구금을 부과하는 형벌 외의 처분에 해당되는 법률이므로 성폭력 흉악범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12개 주들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하고 있으며, 10 개주에서는 만장일치의 배심 평결을 요구

표 7. 성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도구

척도	항목 수	항목의 유형	예측된 재범 유형	예측 정확성	재검증 정확성
VRAG	12	PCL-R, 연령, 부모와의 분리, 알콜문제, 아동기 부적응, 범죄전력, 결혼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조건부 석방의 실패 여부	폭력범죄 일반범죄	높음	높음
SORAG	14	VRAG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 음경측정 평가	폭력범죄 성 범죄	높음 중간	낮음
PCL-R	20	피상적인 매력, 타인의존적인 생활방식, 범죄 전력의 다양성, 충동성, 양심의 가책(연민)의 결여, 속임수적인 성향, 입심이 좋은 성향, 천박한(superficial) 성향	일반범죄 폭력범죄	중간 중간	높음
MnSOST	21	이전의 성범죄 전력, 조건부 석방의 위반, 강제력의 사용, 피해자의 연령, 범죄자와 관련없는 피해자 선택, 청소년기 비행, 약물남용, 직업, 치료의 중도탈락여부, 연령	성 범죄	중간	중간
MnSOST-R	16	MnSOST와 유사한 항목(경험적으로 검증된 가중치 적용)	성 범죄	높음	낮음
RRASOR	4	이전의 성범죄 전력, 남성 피해자의 선택, 범죄자와 관련없는 피해자의 선택 연령	성 범죄	중간	중간
Static-99	10	RRASOR 항목 포함, 비성폭력 범죄 전력, 선고받은 총 구금일, 자신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선택, 미혼 여부, 대물범죄 전력	성 범죄 폭력범죄	중간 중간	중간

주.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SORAG(Sex Offender Risk Appraisal Guide; Quinsey et al., 1998),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 MnSOST-R(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Epperson, Kaul & Hesselton, 2000), MnSOST(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Epperson, Kaul & Huot, 1995;Winick & LaFond, 2003), RRASOR(Rapid Risk Assessment for Sex Offence Recidivism; Hanson, 1997), Static-99; Hanson & Thornton, 1999)

자료 : Winick & LaFond, 2003.

표 8.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는 법률 비교

	취 지	대 상	내 용	기 간	신상공개 시점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성범죄의 확산(원조교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신상을 공개하여 일반에 방호효과를 얻고자함.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 단 공개대상범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게시판에 6월 간 게재 및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
매간법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취지임.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 범죄자가 출옥하거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될 경우 등록 및 성폭력 흉악범의 경우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해야함.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의 범위, 등록정보가 공개되는 범죄의 범위, 정보가 제공되는 기관에 대한 범위, 공개되는 정보의 범 등이 주어 따라 다양함.	10년간 등록 및 주기적 주소 확인 및 성폭력흉악범(SVP)은 더 이상 성폭력 흉악범이 아니라는 위험성 평가를 받고, 위험성이 없다는 결정이 없을 시에는 평생 동안 등록해야함.	석방 이후
성폭력흉악범에 관한 법	성범죄자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선별하여 치료를 제공.	선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SVP로 확인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성범죄자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SVP로 확인된 자를 선별하여 치료위탁.	부정기형 (위험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성폭력 흉악범으로 결정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인 부정기형을 부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2년 동안의 구금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적인 청원 및 재판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VP로 선별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가 향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과 이러한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재범 가능성과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를 평가해내기 위한 심리학적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폭력범죄 및 성범죄에 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들 중에서 표 8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처음의 3가지 척도는 일반범죄와 폭력범죄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며, 나머지 4 가지 척도는 성범죄의 재범 예측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다. 표 7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예측의 정확성에 있어서 중간정도는 상관계수 .25에서 .30의 범위에 해당되며, 높은 정확성은 .35에서 .45의 범위에 해당된다. 재검증 정확성의 경우, 높은 정도는 몇 명의 연구 팀에 의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일치된 결과가 높게 나온 경우이고, 중간 정도는 최소한 2팀

의 다른 위험성 평가 결과가 일치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Winick & LaFond, 2003). 위험성 평가 도구의 내용은 도구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예측 결과와 일치된다. 높은 수준의 위험 요인으로 파악된 일탈적 성적 선호, 피해자 선정 및 범죄 경력, 반사회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SVP선별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표 8의 심리학적 측정도구를 살펴보는 일은 SVP의 선정에 심리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해준다. 국내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들에게 현행 형법 상 정해진 이상의 행정처분을 가할 때에는 꼭 본 건 이외의 전문적인 평가절차의 과정이 꼭 개입되어야만 보다 신중한 선정절차가 될 것이다.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제도와 한국의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우리나라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도입 시 입법 배경이 되었던 법률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인 매간법(Megan's Law)이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그러나 매간법의 법률적 취지, 범위, 대상 선별 등과 비교해볼 때, 매간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의 목적에서부터 다른 취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메간법을 포함한 The Community Protection Act에서는 성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차적으로 성범죄자들을 지역사회 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위협한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고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이러한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한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는 적용 대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성인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그 목적이 위험한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 한다기 보다는 동일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일반예방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나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표 8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 및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메간법은 성범죄자의 양적인 재범율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재범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인 신상공개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감시 제도의 일반적 형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정책적 무게중심이 시설내처우로부터 사회내처우로 점차 이동되어 가면서 정착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동과 행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재범 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즉,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죄질 개선이라는 치료적 관점 보다는 범죄자 자신의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전자감시제도의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자감시의 대상자로는 일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일상생활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 동의하여야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은 안정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재산범죄자, 마약사범, 음주운전의 범죄로 구속되었으며, 지속적인 직장이 있고,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험이 없는 나이 많은 범죄자가 이상적인 전자감시 적격자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자 즉, 음주운전자의 집행유예기간동안의 전자감시, 절도범죄자와 마약사범, 가정사범과 성폭력사범 등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전자감시는 대부분 초범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범죄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Rodgers, 1997).

- ① 프로그램 대상자는 단기자유형에 선고되었거나 혹은 잔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고려되어질 수 있다.
 - ② 전자감시 대상자들은 중한 범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
 - ③ 전자감시 대상자는 알콜중독 혹은 마약중독자가 아니어야 하고, 전자감시를 통한 재택 구금기간동안 알콜과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대상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혹은 반나절정도의 규칙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자감시 대상자의 고용주는 고용인이 받고 있는 전자감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만 한다.
 - ⑤ 전자감시 대상자는 정해진 주거지에서 살아야만 한다.
 - ⑥ 전자감시 대상자는 전화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감시시스템이 전화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⑦ 함께 사는 가족 혹은 다른 동거자도 또한 전자감시에 동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전자감시 대상자로 인해 동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전자감시 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더한층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감생활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보안관찰이라는 추가적인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단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할 점이다.

성범죄 억제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의 과밀 수용, 형사사범의 비용 절감, 사회내 치우의 확산 등을 목표로 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죄질이 낮은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를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05년 4월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제도 즉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이 제기되었다.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통

제방안으로서 전자감시제도가 제기된 것이다. 제기된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방안에서 착용 대상 선정 및 착용 기간의 주요 골자는 표 9과 같다. 이러한 도입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의 논의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안 도입의 취지에 대한 의문이다. 외국의 전자감시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도소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사사범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과 교정 정책을 시설내 치우 중심에서 사회내 치우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경미한 수준의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의 초점은 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통한 재범 억제이며 범죄자의 치료는 강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경우 감시보다는 치료가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범죄자 집단이다. 그런데도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감시적

표 9.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내용

착용 대상	착용 기간	통제 유형
1년 6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초범 중 본인이 희망한 자	선고 형량	통제+가택외부지역제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2회 이상 선고받은 자	6개월 착용	통금
가석방된 자	잔여형기+6개월(부가)	통금+가택외부지역제한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최종 잔여 형기가 6개월 이하 남아있고, 잔여 형기에 대하여 본인이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 판사에 의해 결정	잔여형기+6개월(부가)	통금+가택외부지역제한
초범이면서 2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자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착용 의무화→ 최초 선고 형량의 1/2 착용	가택구금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	실형을 마친 후 일정기간 동안 착용 → 최초 형량의 두 배 착용	가택구금(최초형량)+통금 및 가택외부지역제한(이후 형량)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범죄횟수, 유형, 죄질, 형량에 관계없이 착용 → 최초 형량의 두 배 착용	가택구금(최초형량)+통금 및 가택외부지역제한(이후 형량)
위치 확인 기구 착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착용 종료 이후 전문심리학자 및 정신의학자 등에 의하여 정신적, 신체적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와 의사 등의 협의에 의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연장 착용	통금

자료 : 여의도 연구소 (2005)

주: 통금- 직업활동 및 자유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후 본인의 집에 머물게 하는 유형과 허용된 활동 이외에는 언제나 집에 머물도록 하는 유형

가택외부지역제한- 피해자의 집, 직장 또는 지역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유형과 유흥지역, 주점, 학교 등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하는 유형 및 상가 지역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하는 유형

인 정책만을 부과한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 전자위치확인을 적용할 대상자 선정의 문제이다. 전자감시제도가 초범자나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전자감시제도는 일시적으로 감시되고 있는 동안 범죄를 억제하는 단기적 효과만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전자감시가 일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와 같은 초범자나 경범죄자, 집행유예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대상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표 9의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자의 범위가 초범자, 2회 이상 집행유예 선고자와 같이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자에서부터 가석방된 자와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석방자나 재범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전체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지 전자확인을 부과하는 기간만을 장기간으로 책정하고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범죄자들의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다. 두 번째 논의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재범을 보이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위험성에 따라서 치료프로그램만을 부과하거나 혹은 전자위치확인제도와 치료를 병과하여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이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의 위험요인을 파악해내어 그에 대한 개별화된 치료가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일탈적인 성적 기호나, 피해자의 선정 요인이 성범죄자 재범의 높은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전자위치확인만을 부과하여 가택 구금 및 통금을 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인 재범 예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감 부족이나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인의 반응이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동 상의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이와 같은 인지적 왜곡,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 사회적 기능 및 관계 능력의 부족, 일탈적인 성적 기호와 같은 성범죄자의 특성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들이므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을 해결하기 어렵다.

성범죄자의 치료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치료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범죄자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자들의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에 근거하여 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설 내에 수용된 기간 동안에만 실시되는 치료 프로그램은 단기적 효과만을 갖게 되며, 성범죄자가 석방된 이후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일수록 석방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성범죄자들은 반드시 치료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자들의 경우 치료 도중에 치료에서 탈락하게 되면 오히려 재범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 2004).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기법은 크게 정신역동적 심리치료기법, 화학적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기법을 들 수 있다.

Frisbie & Dondis(1965)는 중구급 급 경비가 이루어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범죄자들 중 정신역동적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을 비교하여 정신역동 치료기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치료가 끝나고 석방된 후 새로운 성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의 수는 치료는 받은 집단이 오히려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치료를 받은 집단이 이후에 성범죄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더욱 낮게 나타났지만 동종의 범죄로 재범을 저지른 비율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정신역동 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재범율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Winick & LaFond, 2003).

한편,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아니지만, 외과적 거세(생식선(gonad)의 외과적 제거)는 유럽에서 성 충동과 성적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거세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거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율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효과도 범죄자의 자발성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 있다. 즉, 강요에 의해서 거세를 받은 범죄자는 불법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근육 증강제와 같은 호르몬을 시술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거세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세로토닌계 약물치료가 최근 들어 거세보다 더욱 인기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세로토닌계 약물을 포함하여 안티안드로젠(antiandrogen) 약물들(cyproterone, acetate,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 leuprolide acetate, medroxy progesterone acetate)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티안드로젠 약물은 성적 충동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몇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남성들이 이 약물들을 먹는 것을 기피하기도 한다. 즉, 체중 증가, 피로감 증가, 두통, 우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ick & LaFond, 2003).

성범죄자에 대한 인지 행동적 치료 기법은 주로 일탈적인 성적 선호를 수정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일탈적 성적 자극이나 환상으로 인한 성적 각성에 기피적인 사건을 연합시키는 혐오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e) 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분노조절, 성교육, 상담, 가족 치료 등이 이루어지

기도 한다. 혹은 피해자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향상도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지역사회 치료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래와의 문제, 가족 갈등, 학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되었다. 비록 8명의 집단에 대한 연구였지만, 치료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재범율은 치료를 받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강간범과 아동 성추행범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재범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inick & LaFond, 200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의 현황과 재범을 분석을 통한 심각성 고찰,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 요인 및 형사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신상공개 제도 이후에 성범죄자에 대한 또 다른 형사정책 방안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그러나 법률이 도입된 기본 취지, 제도 시행의 목적, 대상자의 선정, 대상 범죄의 범위 및 제도의 내용 등은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도입된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논의 중인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먼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제도에서 살펴본듯이, 미국에서는 등록을 적용하고 성폭력 흉악범으로 치료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자의 선별 절차가 여러 단계와 측면을 고려하여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적인 선별 단계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이 조화되어 선별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을 부과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여러 번의 재범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등록만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그냥 석방된 성범죄자 등 다양한 집단들

에 대한 재범 추적 연구와 장기적인 추적 기간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한다. 이러한 장기적 정책 수립은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에서 문제 시 될 수 있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억제와 치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또한 미래의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획일적 제도의 운영보다는 융통성 있고, 단계화 된 성범죄자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4). 경찰백서.
-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특집호), 117-146.
- 이수정 (2004).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여의도연구소 (2005).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자료집.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Beck, A. J., & Shipley, B. E. (1989).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U.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BI (2003). *Uniform Crime Report*.
- Frisbie, L. V., & Dondis, E. H. (1965). Recidivism among treated sex offenders, *California Mental Health Research Monograph, Sacramento :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Mental Hygiene*.
- Furby, L., & Weinrott, M. R., Blackshaw L. (1989). Sex Offender Recidivism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5(1)*, 3-30.
- Gibbens, T. C. N., Soothill, K. L., & Way, C. K. (1978). Sibling and parent-child incest offenc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8*, 40-52.
- Gibbens, T. C. N., Soothill, K. L., & Way, C. K. (1980). Child molestation. In D. J. West(Ed.), *Sex offend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apers presented to the 12th Cropwood Round-Table Conference*(pp. 89-99). Cambridge, Great Britain : Institute of Crimin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 Hanson, R. K. (1997). *The Development of a Brief actuarial Risk Scale for Sexual Offense Recidivism (Document No. 1997-04)*. Ottawa, Ontario, Canada; Solicitor General Canada.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nson, R. K., Steffy, R. A., & Gauthier, R. (1993). Long-Term Recidivism of Child Mole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46-652.
- Hanson, R. K., & Thornton, D. (1999). *Static-99; Improving Actuarial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1999-02*. Ottawa, Ontario, Canad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 (2004). *Sex Offender Treatment*.
- Prentky, R. A., Lee, A. F. S., Knight, R. A., & Cerce, D. (1997). Recidivism Rates among Child Molesters and Rapists; A Methodological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1*, 635-659.
- Quinsey, V. L. (1986). Men who have sex with children. In D. N. Weisstub(Ed.), *Law and Mental Health : International Perspectives*(Vol. 2, pp. 140-172). New York : Pergamon.
- Rice, M. E., Harris, G. T., & Quinsey, V. L. (1990). A Followup of Rapists Assessed in a Maximum Security Psychiatric Fac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435-448.
- Rodgers, B. (1997). *Community-Based Corrections An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mpany*.
- Winick, B. J., & La Fond, J. Q. (2003).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Washington, DC;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rrect Understanding on Recidivism Rate of Sex Offences and Searching for the Preventive Strategies of Recidivism

Soo Jung Lee Kyong Ok Kim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some disputes on the recidivism issue of sex offence and screening and therapeutic possibilities for sex offenders. Recently, registration system was adapted for sex offenders committing offences against minors and even broader electronic monitoring for sex offender population is under discussion. However, the recidivism rate for sex offenders has been somewhat incorrectly known and any empirically proven screening procedure to assess risk of sex offenders is not set yet. This study explored recidivism evidences accepted academically and introduced risk assessment tools for sex crimes used in foreign countries. Also, community treatment approaches were reviewed, which were applied as a substitutive condition of incarceration for sex offenders. Also, various criminal procedures were compared to protect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Key words : sex offender commitment, therapeutic jurisprudence, recidivism rate of sex offences

원고접수 : 2005년 7월 5일
심사통과 : 2005년 8월 10일